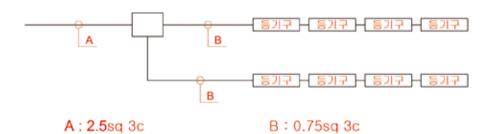


등기구용 전원 인입선

관련조항: 판단기준 제168조

Q

- O 당사는 조명기기용 등기구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.
- 등기구용 전원 인입선으로 KS C 60227-5 300/500V 0,75m² × 3c를 사용하는 문제를 질의합니다.
 - 시방서에 전등배선 450/750V HFIX 2.5m² × 2, E-2.5m²(접지선은 RACE 전체 라인에 시공하도록 설계)로 되어 있으니 등기구 인입선의 전선도 동일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2.5m²를 사용해야 하지만 0.75m²를 분배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구합니다. 아래와 같이 당사의 제품은 KS C 60227-5 300/500V 0.75m² × 3c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.
 - 감리 측에서 전등 배선이 2.5㎜이니 등기구 인입선도 동일한 2.5㎜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며, 당사의 전원인입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.
 - 0.75m² 전원선을 아래와 같이 따매기해서 연결용량을 제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?



A

-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8조 및 내선규정 2210-4에 따라 저압 옥내 고정용 배선은 2.5mm 이상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코드 또는 켑타이어 케이블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3310-6에 의하여야 하며, 전구선은 내선 규정 3310-3에 따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. 기타 조명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내선규정 제3310 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★★